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028 호 2016. 9. 22.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61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62호[도로명주소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163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899호[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906호[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914호[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공고] 1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6-1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마루주택 대표 김한모, 박영선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 개발지구 B2블럭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1】 참조

2016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붙임1】

1. 사업계획 승인내역

구 분	승인내역				
사업명칭	송정택지개발지구 B2블럭 한양수자인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택지개발지구 B2블럭				
사업주체	(주)마루주택 대표 김한모, 박영선				
사업주체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24, 216호, 217호(원곡동, 트리플렉스비단지)				
대지면적	28,982.5700㎡				
건축면적	3,912.8490㎡				
연 면 적	71,019.4934㎡				
건폐율/용적률	13.50% / 179.65%				
층수/동수/세대수	지하1층, 지상22~25층 / 주:6개동, 부속:5개동 / 468세대				
사업규모	형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A	374세대	84.9843㎡	25.0014㎡	109.9857㎡
	B	94세대	84.9295㎡	25.6756㎡	110.6051㎡
	계 468세대				
부대복리시설	구 분	합 계(㎡)			
	경비실	25.000㎡			
	관리사무실	64.800㎡			
	조경시설	10,922.24㎡(37.68%)			
	주차장	591대			
	경로당	120.960㎡			
	어린이집	241.820㎡			
	주민공동시설	781.605㎡			
	주민운동시설(외부)	82.480㎡(1개소)			
	어린이놀이터	668.950㎡(2개소)			
근린생활시설	453.580㎡				
사 업 비	171,992,098천원				
사업기간	2016. 10. ~ 2019. 1.				

2.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승인관련 서류 :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162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진장유통1로 34 (진장동)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9.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용접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유류2단지 66 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유류1로 34(진정동)	2016-09-22	진정유류로에서 분기된 도로로 진정유류로과의 연계성을 반영	2016-07-28	
2	울산광역시 북구 영도동 314-4	울산광역시 북구 새정터8길 77(영도동)	2016-09-22	신전 원대가 삼포개항 당시 새정터(스카프과농장)로 사용하여 새정터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1-12	
3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898 3L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4길 53-3(산하동)	2016-09-22	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4	울산광역시 북구 화평동 971-6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5길 6-1(화평동)	2016-09-22	동심마을과 슬밭마을을 합하여 사정이라 불리어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화평동 439-3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5길 25-1(화평동)	2016-09-22	사람이 사는 터전을 말하는 지역이며 화평지역의 대표적인 옛 지명이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6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555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7길 19-17(매곡동)	2016-09-22	기존 자연마을인 신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242-5	울산광역시 북구 비석길 10-2(무룡동)	2016-09-22	예전 지명인 비석거리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8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영혼지구 528 1-1L	울산광역시 북구 고원로 134-1(진정동)	2016-09-22	고원 비산길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9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838 7L 외 1필지 (838 8L)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1길 30(산하동)	2016-09-22	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10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영혼지구 148 2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18길 44-1(진정동)	2016-09-22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동산시미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1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768 4L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4길 6(산하동)	2016-09-22	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12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242-13	울산광역시 북구 비석길 10-1(무룡동)	2016-09-22	예전 지명인 비석거리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13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242-12	울산광역시 북구 비석길 10-3(무룡동)	2016-09-22	예전 지명인 비석거리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14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578 8L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2길 6(산하동)	2016-09-22	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15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지구 898 4L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4길 51(산하동)	2016-09-22	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4-05-07	
16	울산광역시 북구 화평동 470-5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3길 10(화평동)	2016-09-22	화평은 화평의 옛 지명이며 산세가 겹겹이 높기 전 곳에 가던 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16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5길 6-1(화봉동) 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9. 22.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5길 6-1	울산광역시 북구 화북동 971-6	2016-09-22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5길 25-1	울산광역시 북구 화북동 439-3	2016-09-22	건축물 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3길 10	울산광역시 북구 화북동 470-5	2016-09-22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 - 899호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요청기관	제공일자	법적근거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울산지방법원	2016. 8. 8.	민사소송법 제294조	울산지방법원의 재산분할사건 심리에 필요한 사실조회	등록번호, 토지소재, 소유자 주소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울산광역시 복구청 창조경제과	2016. 8. 22.	국세징수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체납처분	등록번호, 토지소재, 소유자 주소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울산지방법원	2016. 9. 20.	민사소송법 제294조	울산지방법원의 구상금 사건 심리에 필요한 사실조회	등록번호, 토지소재, 소유자 주소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9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축제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확대 및 명칭 정비 등

- 15명 이내의 위원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안 제3조제1항)
-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대로 조정(안 제3조제4항)
- “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 ⇒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로 정정(안 제3조제4항제4호)

나. 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 당연상실 사유 삭제(안 제6조제1호)

3.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52-241-7332, 팩스번호 : 052-241-73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제6조제1호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장기치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p> <p>②·③ (생략)</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전체 위원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u>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1. ~ 3. (생략)</p> <p>4. "<u>울산 달내 쇠부리놀이보존회</u>"</p> <p>5·6. (생략)</p>	<p>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 ----- ----- <u>25명</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u>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u>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u>"</p> <p>5·6.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위원이 <u>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2. ~ 5. (생략)</p>	<p>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p> <p>1. ----- <u>장기치료</u> ----- ----- -----</p> <p>2. ~ 5.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9호, 2015.6.22.,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3.5>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6-914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신보로드(주)		
	대표자 (성명)	문성철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22번길 15-19
소하천명		상연암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399번지		
	면적	일시 : 4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일시 : 2016. 09. 26. ~ 2016. 10. 15.		
	목적 및 사유	오수관로 매설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